

의안번호	2203936
의 퇴 인	김교홍 의원
회 답 일	2024. 12. 6.
추계번호	24A3799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2항 신설 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)	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과 보급 촉진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의6 ¹⁾ 에 따른 구동축전지에 대한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장착한 경우에는 성능별로 제1항 ²⁾ 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0조제2항 신설 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 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1) 「자동차관리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의6. “구동축전지”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
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.

2) 안 제10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
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
2.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
3.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전기차 주차 중 발생하는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터리 관리 시스템 안전기능(이하 “BMS 안전기능”)³)을 장착한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보유한 자에게 기존 지원 수준의 20% 범위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⁴)
- 개정안에 따라 BMS 안전기능을 장착한 차에 지원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
 - 현재 전기차와 관련된 기존 재정사업으로는 전기승용차, 전기화물차 및 전기이륜차 등을 구매하는 자에게 국비 또는 지방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“전기자동차 보급 사업”⁵)⁶)이 있음
 - * [참고자료 1]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실시 현황
 - 개정안에 따라 BMS 안전기능이 장착된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보유한 자에게 기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최대 20% 범위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가정하면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
3) 배터리 관리 시스템(BMS)은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 및 방전 조절, 전압·전류 및 온도 감시, 냉각 제어 등을 수행하는 장치로, 기본적인 기능의 경우 모든 전기차에 장착되어 있음. 개정안은 최근 전기차 주차 중 발생한 화재 등을 계기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춘 전기차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데,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(BMS)이 아니라 주차 중 배터리 상태 이상을 감지하여 제조사·소유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기능(BMS 안전기능)을 갖춘 전기차에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검토함

4) 안 제10조제2항은 추가 지원 대상 차량을 “환경친화적 자동차”로 규정하여 전기차 외에도 수소차 등 다른 차량 또한 지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,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고려하여 전기차를 중심으로 검토함

5) 무공해차 보급사업(1633-311,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)의 내역사업

* 환경부 소관이며, 해당 사업 외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하는 재정사업은 별도로 없음

6)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의 근거를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아닌 「대기환경보전법」으로 보고 있으나, 널리 볼 때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이기도 하므로 개정안의 내용과 연계하여 검토함

「대기환경보전법」

제58조(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)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,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1.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. (후단 생략)

□ 개정안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은 BMS 안전기능을 장착한 전기차 대수에 지원금 추가 지급 단가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○ 안 제10조제2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“구매자” 및 “소유자”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 지원 대상이 되는 전기차의 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①기준에 BMS 안전기능을 장착하여 운행 중인 차량의 대수와 함께 ②추계기간 동안 신규로 판매될 차량의 대수를 가정할 수 있어야 하나, 해당 전기차에 대한 기존 등록 정보가 없으며 신규 판매 대수 또한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

－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현재 BMS 안전기능을 장착하여 운행 중인 전기차의 대수는 파악된 바 없음

* 참고로,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0월 말 기준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총 66만 1,141대임

[참고자료 2]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 현황

*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판매된 전기차 중 BMS 안전기능을 갖추지 않은 전기승용차는 총 1만 583대로 확인됨⁷⁾

－ 또한, 전기차 화재 사고 등을 계기로 정부 대응 방향⁸⁾이 발표되며 향후 신규 판매되는 전기차 중 BMS 안전기능을 갖춘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기초정보가 부재하므로 지원금 지급 대상 차량의 대수를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
* 참고로, 환경부에 따르면 2030 NDC 목표달성을 위한 전기차 보급 목표 총량은 2025년 31만 9,272대, 2026년 약 51만 400대, 2027년 54만 1,000대 등임⁹⁾

7) KGM 토레스EVX 5,222대, 벤츠 EQE 1,488대, 기아 니로EV(DE) 1,229대 등 총 1만 583대

8) 정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확보 방안

□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(BMS)*의 기능을 개선하고,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한다. ○ 첫째, 현대·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,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. ○ 둘째,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·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(예 : 5년 → 10년 등)하고, 자동차 보험료 할인*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도모한다. * BMS 서비스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제공 보험사를 8개 →12개로 확대

자료: 정부 보도자료 “전기차 배터리 안전성, 화재 대응력 대폭 높인다”(2024.9.6.)

- 안 제10조제2항은 지원금의 추가 지급 한도를 기존 지원의 최대 20%로 규정하고 성능에 따라 지원금 지급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지원금 가산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존 지원 수준을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차등 지급 요건 및 기준 또한 알 수 없으므로 지원 단가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움
 - 지원 단가의 추계를 위해 개정안에 따른 지원금 가산 지급의 모수가 되는 기존 지원을 “전기자동차 보급 사업”으로 보고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지급 단가를 준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,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단가에 대한 정보가 부재¹⁰⁾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지원 단가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아울러, 개정안은 전기차의 BMS 성능에 따라 최대 20% 내에서 지원금을 차등하여 가산 지급하려는 취지로 보이나, 현 시점에서는 차등 지급의 기준이 되는 성능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음
- 이에 BMS 안전기능을 장착한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보유한 자에게 기존보다 지원금을 가산지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

9) 2025년은 정부안, 2026~2027년은 중기사업계획(2023~2027) 기준이며, 전기이륜차는 제외된 대수임

10) 환경부는 “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경우 국비 정액지원사업으로 지방비는 국비에 비례하여 편성되며, 지방비 지원 실적은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”는 의견을 제출하였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김효진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진	02-6788-4654	hjkim1991@na.go.kr

[참고자료 1]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실시 현황

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개요

구분	내용
사업목적/내용	■ (사업목적) 무공해차(전기·수소)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 ■ (사업내용) 전기차·수소차 구매시 구매자금 지원,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
사업기간	■ 2011~계속 ※ 기존 “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(1633-301)”과 “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(1633-306)”에서 전기차·수소차 보급 성격의 내역사업을 분리하여 2023년 “무공해차 보급사업(1633-311)” 신설
추진배경·경과	■ 전기자동차 개발 및 보급계획(2010.9.) 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(2011), 수소차 보급사업(2013) 개시 ■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(관계부처 합동, 2019.10.) 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“친환경 미래 모빌리티”(관계부처 합동, 2020.7.) 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·2030 NDC 확정(탄중위, 2021.10.) ■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략(관계부처 합동, 2022.1.) ■ 「제1차 국가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계획」(2023.4.)
사업시행주체	■ 환경부(한국환경공단), 지방자치단체
지원형태	■ 직접, 보조(전기이륜차 국가 50%·지자체 50%, 그 외 전기·수소차 정책보조)
지역	■ 전국
법적 근거	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(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)

자료: 환경부

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실적(2020~2024.10.)

(단위: 대, 백만원)

	지원 건수	지원 금액(국비)
2020	46,713	759,763
2021	100,427	1,027,463
2022	164,486	1,446,291
2023	162,605	1,572,969
2024.10	122,693	1,031,067

주: 지원 건수는 국토교통부 신규등록대수 기준이며, 전기이륜차는 제외된 수치
 자료: 환경부

[참고자료 2]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 현황

전기자동차 누적 등록 현황

(단위: 대)

차종	등록대수
승용	509,889
승합	10,393
화물	140,337
특수	522
합계	661,141

주: 2024년 10월 말 기준
자료: 국토교통부